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24 호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 방 방 재 청 장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非常警報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1)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警報設備である非常警報設備および単独警報型感知器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1 호 • 제 6 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警報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1 号、第 6 号の規定にわたるこ非常警報設備および単独型感知器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비상벨설비”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 “非常ベル設備”とは、火災発生状況を警鐘で警報する設備をいう。
2. “자동식사이렌설비”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2. “自動式サイレン設備”とは、火災発生状況をサイレンで警報する設備をいう。
3.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3. “単独警報型感知器”とは、火災発生状況を単独で感知して自体に内蔵された音響装置で警報する感知器をいう。
4. “발신기”라 함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4. “発信機”とは、火災発生信号を受信機に手動で発信する装置をいう。
5. “수신기”라 함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5. “受信機”とは、発信機で発する火災信号を直接受信して、火災の発生を表示および警報する装

置をいう

제 4 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第 4 条(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 ① 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は、腐食性ガスまたは湿気などによって腐食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 마다)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地区音響装置は、消防対象物の階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当該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音響装置までの水平距離が 25m 以下(地下街のうち、トンネルの場合には走行方向の側壁の長さ 50m 以内ごと)とし、当該階の各部分に有効に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非常放送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2)に適合した放送設備を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と連動して作動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地区音響装置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音響装置は、定格電圧の 80%電圧で音響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音響装置の音量は、取り付けた音響装置の中心から 1m 離れた位置で 90 d B 以上にな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⑤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発信機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地下口の場合には、発信機を設置しないことができる。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 操作が容易な場所に設置して、操作スイッチは底から 0.8m 以上 1.5m 以下の高さに設置すること。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 마다)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消防対象物の階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当該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発信機までの水平距離が 25m 以下(地下街のうち、トンネルの場合には走行方向の側壁の長さ 50m 以内ごと)とな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廊下または別に区切られた室として歩行距離が 40m 以上の場合には追加で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発信機の位置表示灯は、箱の上部に設置するものの、その明かりは、取付面から 15°以上の範囲内で取付地点から 10m 以内のどちらでも簡単に識別できる赤色灯とすること。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⑥ 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の常用電源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 電源は、電気が正常に供給される蓄電池または交流電圧の屋内幹線とし、電源までの配線は専用とすること。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開閉器には"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用"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には、その設備に対する監視状態を 60 分間持続した後、有効に 10 分以上警報できる蓄電池設備(受信機に内蔵する場合を含む。)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⑧ 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の配線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たものの他に、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1. 電源回路の配線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によって、それ以外の配線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に従うこと。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電源回路の電路と大地の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が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付属回路での電路と大地の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1 警戒区域ごとに直流 250V の絶縁抵抗測定計を使って測定した絶縁抵抗が 0.1MΩ 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폴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配線は、他の電線と別途の管、ダクト(絶縁効力があるもので区画した時にはその区切られた部

分は別個のダクトとみなす)、モールドまたはプルボックスなど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60V未満の弱電流回路に使う電線にそれぞれの電圧が同じである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5 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单独警報型感知器) 单独警報型感知器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 各室(隣り合う室内の床面積がそれぞれ30平方m未満で壁体の上部の全部または一部が開放されて隣り合う室内と空気が相互流通される場合にはこれを1個の室と見る)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底面積が150㎡を超過する場合には、150㎡ごとに1個以上設置すること。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 最上階の階段室の天井(外気が相通じる階段室の場合を除く。)に設置すること。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3. 乾電池を主電源で使う单独警報型感知器は、正常な作動状態を維持できるように乾電池を交換すること。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 39 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4. 常用電源を主電源で使う单独警報型感知器の2次電池は、法第39条規定による性能試験に合格したのを使うこと。

제 6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 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6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警報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非常警報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 동시에

[소방방재청고시 제 1994-100 호(1995.1.6)]을 폐지한다.